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7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창조행정담당관 박상희 과장(044-203-5530), 이종경 사무관(5533)
규제개혁TF 배준형 팀장(044-203-5590), 박은표 사무관(5568)

산업부 공공기관 '숨은 규제' 개선 본격 착수

- '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' 개최 -
- 공공기관 규제개선,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 -

*# **(사례 1)**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르면 올 8월부터 매번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지급하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됐다. 그는 매월 약 80만원에 이르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어 현금보유 부담을 덜게 되었다.*

*# **(사례 2)** 남부발전에 전기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는 동서발전, 중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의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. 각기 운영되던 발전 5사의 유자격업체 등록이 통합되면서 남부발전의 유자격업체이던 B씨 회사가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.*

*# **(사례 3)** D군 P읍에 사는 C씨는 조만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를 하고 있다. 경제성이 낮아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던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P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C씨는 매번 LPG를 배달시켜 사용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.*

□ **산업부 소관 공공기관**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·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**'숨은 규제'를 발굴해 개선**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.

□ 이와 관련,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윤상직)**는 7. 22. (화)** 14:00,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**김재홍 제1차관**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**'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' 회의**를 개최함.

○ 이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**'숨은 규제'**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**자체 개선과제**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**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.**

-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규정 수는 약 3,300여개
- 이 중 인사, 복무, 내부감사 등 기관 내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, 국민·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1,400여개로 한정하고, 동 규정과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함

□ 주요 유형별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나, 진행될 공공기관 규제개선 사례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.

① **대(對) 국민 서비스 개선**

○ 한국전력공사는 **전기요금**을 **신용카드로 납부**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**7kW에서 20kW까지 확대**해 약 **93만호**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.

○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**소외된 지역**에 대해 지역 **도시가스사**가 **탱크로리로 도시가스**를 **공급**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, 지역난방공사는 **간절기**(11월, 3월)에 **난방·온수 공급**이 **중단**되는 경우 **기본요금 감면**을 **확대**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일 예정임.

② 중소기업 등 **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**

○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**실적 요건을 완화**하고, **창업기업·장애인 기업 등**에 대한 입찰 **평가 우대, 선금지급 대상 확대**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 노력.

③ **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**

○ 한전 등은 **물품계약을 해지**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**계약보증금**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**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**하기로 하고, 유찰된 **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**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함.

○ 또한,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**전문경영인**인 경우 대표자의 **신규기업**에 대해서는 **무역보험 이용제한**을 **예외적**으로 **제외**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하기로 함.

④ 입찰 등 거래 **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**

○ 유사한 품목·정비 등에 대해서도 **개별적으로 운영**하던 **발전5사**의 **유자격 업체 등록·관리**를 **통합**하고,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하기로 함.

*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(업체 18.5억원, 발전사 6.5억원)

**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 연간 1,020회 → 204회로 약 80% 감소 예상

□ 더불어, 9월 예정인 공공기관 **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**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함.

* (산업부 중점관리기관) 부채중점 : 11개(한전, 한수원, 발전 5사, 가스, 석유, 광물, 석탄)
방만경영 : 부채중점 11개 + 방만중점 5개(강원랜드, 가스기공, 한전기술, 지역난방, 무보)

○ 7월 **서부발전**(7.9)과 **석유공사**(7.18)가 방만경영 개선에 **노사합의**를 하였으며,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**6개 기관*이 개선을 완료**함.

* (이미 완료)무역보험공사(3. 26.), 석탄공사(4. 22.), 가스기술공사(5.13.), 지역난방공사(6. 24.)

○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* 대비 4조 2,794억 원의 부채를 절감함(7.20. 기준)

* (재무전망 기본안)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부채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전 재무전망

○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, 일부기관의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목표대로 달성토록 독려함.

□ 한편 **김재홍 차관**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**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**하면서도 기관별로 **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**하면서 "다른 기관의 과제라도,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."고 **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 개선 노력을 독려**함.

* (공통 적용가능 사례 예시)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 (한전, 발전사 등), 영세기업을 위해 소규모 용역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대상 하향조정 (발전사, 가스공사 등)

○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대한상의 등 경제 협·단체,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하여 **8월 중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'규제개선 대상 모집단(母集團)'을 최종 확정**하고,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

○ 또한,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, 차질 없이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임.

붙임 : 1.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요
2. 공공기관 규제개선 유형별 주요 사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이종경 사무관(☎ 044-203-5533),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은표 사무관(☎ 044-203-55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요

□ 목적

○ 산업부 소관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추진현황 점검

- 중간평가(9월) 대비, 부진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

○ 공공기관 규제 개선안 검토 및 개선방향 논의

□ 회의개요

○ **일시/장소** : '14.7.22(화) 14:00~15:20 /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
○ **참석자** : **제1차관**, 기조실장, 정책기획관, 소관과장, 16개* 공공기관장

* 한전, 가스, 석유, 한수원, 발전5사, 석탄, 광물, 지역난방, 무보, 한전기술, 가스기공, 강원랜드

○ **회의내용**

-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결과
- 공공기관 규제개선안 검토 결과
- 기관별 정상화 부진사항 대응계획 및 규제개선 등 논의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세 부 일 정	비 고
14:00~14:10	10′	· 모두 말씀	차관님
14:10~14:20	10′	·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현황	창조행정담당관
14:20~14:25	5′	· 공공기관 규제개선안 검토 결과	규제개혁팀장
14:25~15:15	50′	· 정상화 부진사항·대응 및 규제개선 논의	소관과장 참석기관 등
15:15~16:20	5′	· 마무리 말씀	차관님

붙임2 공공기관 규제개선 유형별 주요 사례

1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개선

① **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대상 확대** (한전)

○ **(문제점)**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영세상인 등 **이용자의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·부담 발생**

○ **(개선방안)** 전기요금 **신용카드 납부 대상 확대**

현 행	개 선 안
▪ 주택용(APT 포함), 주거용 심야(갑) **▪ 他 종별 : 계약전력 7kW까지**	▪ 주택용(APT 포함), 주거용 심야(갑) **▪ 他 종별 : 계약전력 20kW까지**

⇨ 보증금액 수준 : (7kW) 28만원~47만원, (20kW) 56만원~108만원

○ **(기대효과)** 영세상인 등 부담경감 **(대상호수 약 93만호 증가)**

② **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 확대** (가스공사)

○ **(문제점)** 경제성이 취약한 **소외지역**에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투자를 하기 어려워, 해당 지역 **도시가스 사용 어려움 발생**

○ **(개선방안)**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외지역 **도시가스사 탱크로리 공급**

현 행	개 선 안
▪ 천연가스 공급규정 (탱크로리 공급대상) 1.-7. (생략) 8. <신 설>	▪ 천연가스 공급규정 (탱크로리 공급대상) 1.-7. (생략) 8. 시/군에 공사의 추가 공급관리소 건설이 불가한 지역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

⇨

○ **(기대효과)** 국민의 **에너지이용 서비스 확대**, 도시가스사 부담 완화

③ **지역난방 열공급 중지로 인한 요금감면 확대** (지역난방공사)

○ **(문제점)** 난방수요가 있는 **간절기**(11월, 3월)에 **난방 등이 중지**될 경우, **기본요금 감면 요건**이 동절기(12월~2월)보다 **불리**

○ **(개선방안) 간절기** 열공급 중단 **요금감면 요건을 동절기와 일치**

현 행	개 선 안
▪ 열공급규정 (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 감면) - 동절기 : 야간(20시~08시) 1시간 단위 기본요금 1일분 감면, 주간(08시~20시) 3시간 단위 기본요금 1일분 감면 - 기타절기 : 12시간 단위로 기본요금 1일분 감면	▪ 열공급규정 (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 감면) - 동절기 또는 간절기 : 야간(20시~08시) 1시간 단위 기본요금 1일분 감면, 주간(08시~20시) 3시간 단위 기본요금 1일분 감면 - 기타절기 : 12시간 단위로 기본요금 1일분 감면

○ **(기대효과)** 동절기 외 난방수요가 많은 **간절기**에 난방·온수 등의 **공급이 중지**되는 경우 **고객에 대한 보상 확대**

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

① **입찰 참여시 실적 요건 완화** (한전, 발전사, 가스공사 등)

○ **(문제점)** 공공기관 발주 조달에서 요구하는 **실적요건 중 일부가 과도**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제한

○ **(개선방안)**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**실적요건 완화**

현 행	개 선 안
▪ (가스공사 예)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범위 공사가격의 1/3이상 1배 범위 이내에서 정함	▪ 시공실적은 공사의 특성 및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1/3이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

○ **(기대효과) 우수 중소기업**에 대한 조달시장 **참여 기회 확대**

② **창업기업,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평가 우대** (발전사, 가스공사 등)

○ **(문제점) 창업기업** 등은 신용평가등급, 사업실적 등에서 **불리**

○ **(개선방안)** 최초 시장진입 기회 제공을 위한 **평가 우대 기준 적용**

현 행	개 선 안
▪ (남부발전 예) 물품구매 적격심사 1.1 납품실적(기본점수 2.0) 1.2 기술능력(공장등록 5년 이상 5.0) 1.3 경영상태(신용등급별 22~27점)	▪ (남부발전 예) 물품구매 적격심사 1.1 납품실적(기본점수 3.0) 1.2 기술능력(공장등록 3년 이상 5.0) 1.3 경영상태(창업기업 27점 부여)

○ **(기대효과)** 창업기업 입찰기회 확대 등으로 **창업활성화, 일자리창출**

③ **영세 기업을 위한 선금지급 범위 확대** (발전사, 가스공사 등)

○ **문제점)** 용역계약 체결 이후 **선금지급 대상금액이 높아** 소규모 용역 계약기업의 **업무 초기 유동성 문제 발생**

○ **(개선방안)** 용역계약시 **선금지급 대상 계약금액 하향 조정**

현 행	개 선 안
▪ (중부발전 예) 선금운영 지침 선금지급요건 :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·용역 또는 물품제조 계약	▪ (중부발전 예) 선금운영 지침 선금지급요건 :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

○ **(기대효과)** 소규모 용역사의 유동성 지원 및 초기 재원부담 감소

3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·비합리적 사항 개선

① **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** (한전, 발전사 등)

○ **(문제점)** 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**계약해지시** 계약 **이행량에 상관없이** 계약 **보증금 전액을 징수**하여 업체에 부담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○ **(개선방안)** 단가계약 해지시 **기존 이행분**은 계약보증금 **징수 제외**

현 행	개 선 안
▪ (계약보증금 처리)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	▪ (계약보증금 처리)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. 단,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귀속하지 아니함

○ **(기대효과)** 일부 계약을 이행한 업체에 대한 보증금 부담 경감

② **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회생 지원** (무역보험공사)

○ **(문제점)** 前 공사 무역보험 **사고기업 대표자**가 신규기업 대표자로 되는 경우 해당인의 **무역보험(또는 보증) 이용제한**(R급)

- 전문경영인 등의 **회생·창업의지를 약화**시키는 부작용 발생

○ **(개선방안) 전문경영인**이거나 **회생절차**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**이용제한**(R급)의 **예외 적용**

현 행	개 선 안
▪ (신용등급평가 특례) R급으로 특례평가된 기업이 이미 폐업한 경우로서, 조사담당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	▪ (신용등급평가 특례) R급으로 특례평가된 기업이 이미 폐업한 경우 또는 대표자가 전문경영인과 회생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등 고용임원인 경우로서, 조사담당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

○ **(기대효과)** 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**회생 지원** 방안 마련

③ **유찰 후 재입찰시 납품 기한 변경 의무화** (남부발전)

○ **(문제점)** 유찰 후 **재입찰시** 납품기한이 확정된 경우에 **납품 준비를 위한 기간**이 **짧아**져 납기 준수 어려움 발생

○ **(개선방안) 원칙적**으로 납품기한을 **기간으로 명시**하고, 불가피한 경우 **유찰시** 확정일자로 된 **납품기한 변경을 의무화**

현 행	개 선 안
▪ 계약규정(입찰공고) <신 설>	▪ 계약규정(입찰공고) 입찰공고에 명시되는 납품기한은 기간으로 명시. 다만 자재수급상 불가피하여 확정일자로 명시한 경우, 재공고 입찰시 행정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변경하여야 함

○ **(기대효과)** 적정 납품기한 보장으로 공급 기업의 부담 방지

4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

① **발전5사 기자재 공급·정비 유자격업체 통합 관리** (발전5사)

○ **(문제점)** 발전5사가 **유사한 기자재, 정비소요**에 대해 **유자격 업체 등록절차**를 **개별적**으로 운영 중

- **관련 업체**는 발전사별로 **반복 신청**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발생, **발전사**는 동일기업에 대해 **중복심사**로 행정력 낭비

○ **(개선방안)** 발전5사 **공통 51개 품목 및 정비소요**에 대해 유자격 업체 **등록절차 및 관리**를 **통합**적으로 운영

현 행	개 선 안
▪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▪ 정비적격업체 관리지침 (발전사별 개별 기준 운영)	▪ 공통품목(51개) 세부규격 표준화 ▪ 「발전5사 통합 유자격 관리기준」 제정 ▪ 유자격 통합관리 시스템(Easy-U) 운영 - 1개사 신청 후 발전5사 공동인증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○ **(기대효과) 관련 업체**들의 유자격 등록 관련 **비용 절감**, 발전사 등록 **심사평가 절차 감소**로 업무 효율화

*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(업체 18.5억원, 발전사 6.5억원)

**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 연간 1,020회 → 204회로 약 80% 감소 예상

② **입찰 등록시 토목감리원 보유의무 개선** (한전)

○ **(문제점) 감리업체**는 토목감리원이 필요한 **감리용역에 응찰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**으로 토목관리원을 **보유**해야 함

- 그러나, 응찰시는 해당 감리용역의 **계약여부가 불확실한 시점**으로, **의무적**으로 토목관리원을 **보유**해야 하는 것은 **과도한 부담**

○ **(개선방안)** 토목감리원 보유기준일을 **계약체결일 전**으로 변경

현 행	개 선 안
▪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토목감리원은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여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소속여부를 확인	▪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토목감리원은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여 계약체결전일 기준으로 소속여부를 확인

○ **(기대효과)** 입찰시 토목감리원 보유 인건비 등 관련 업체 부담 완화

③ **기자재 중복 검사 완화** (지역난방공사)

○ **(문제점) 일부 기자재**(예: 패키지 에어컨)의 경우 **공인인증기관 검사**에 **추가**하여 공사의 **별도 검사**를 합격하여야 납품 가능

- KS 등 관련 규정에 의한 **인증기관이 승인한 기자재**를 공사에서 **중복 검사**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 **과도한 부담**

○ **(개선방안) 공인인증기관**에서 **승인**한 기자재의 경우 **별도검사 제외**

현 행	개 선 안
▪ 기자재공장검사 업무 수행기준 2. 기자재 입고검사 요령 (8) <신 설>	▪ 기자재공장검사 업무 수행기준 2. 기자재 입고검사 요령 (8) 패키지 에어컨 기자재 등 인증기관에서 승인한 규격생산품일 경우 제작사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 입고 가능

○ **(기대효과)** 중복검사 폐지를 통해 **업체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 경감**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